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33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, 편안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「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- 평창군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-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장애인단체는 장애종류·정도 등에 따라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비영리법인·단체를 말함.

나. 업무 등 (안 제5조)

-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
- 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협력·지원

다. 이용대상 및 사용허가 (안 제7조, 안 제8조)

-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
- 일반기관·단체 등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허가 가능

라. 위탁운영 (안 제11조)

-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
-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, 연장계약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

마. 경비보조 등 (안 제12조)

-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.
-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 제26조의 의거 수입대체경비로 해당 위탁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에 67백만원 반영되었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4. 14. ~ 2017. 5. 4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반영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법제심사 : 원안동의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”란 장애종류·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제2장 설치 및 업무

제4조(설치 및 위치) ① 군수는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와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벌1길 144-19(상진부리 245-23)에 둔다.

제5조(업무 등) ① 센터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립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·제공
2.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
3. 단체 육성 발전
4. 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협력·지원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, 회의실, 프로그램 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둔다. 이 경우 필요한 시설의 종류·용도·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책임 있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 다만,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.

1. 관리책임자: 군수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
2. 직원: 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 각 1명

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안전사고 예방

2.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·관리
 3.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·시행
 4.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·관리
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·조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3장 이용 및 사용

제7조(이용대상 및 시간 등)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하되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.

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휴관한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
2. 토요일
3.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·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
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이용시간 및 휴관하는 날을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군 인터넷

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제8조(사용허가 및 신청 등) ① 군수는 일반기관·단체 등이 세미나·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·단체 등은 그 사용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, 군수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해당 신청기관·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그 신청과 통지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제3항에서 또한 같다.

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일반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·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(취소·해지)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기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(취소·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1. 변경: 사용예정 7일 전
2. 취소 또는 해지: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일 전

④ 군수와 사용자간에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 등 신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목적 사용을 우선하되,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.
2.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예정자가

없을 경우는 제외한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
1.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
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
3.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, 감염병·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
4.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

⑥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,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.
2.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기구·장치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.
3. 정치·종교·노동 등 집회,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4. 사용허가 받은 후 다른 기관·단체에게 대신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.
5. 그 밖에 센터의 자체 운영규정,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.

제9조(이용료 및 사용료) 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를 무료로 한다.

② 사용자는 해당 사용예정 7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

(계좌이체 등 현금 외의 방법을 포함한다. 제3항에 따른 반환방법도 또한 같다)해야 한다. 다만,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그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: 전액 면제
2.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,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: 100분의 50 감경
3. 복지시설·단체: 100분의 30 감경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: 100분의 10 감경

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. 다만, 제8조제3항(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그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가 해당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전까지 제출된 날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.

1. 5일 전: 100분의 50
2. 3일 전: 100분의 20
3. 전일(前日): 100분의 10

⑤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.

제4장 관리 운영

제10조(기본원칙)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(이 조에서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은 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.

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(이 조례에서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·수탁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해야 한다.

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보조 등)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, 그에 부족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「지방회계법」 제26조의 수입대체경비로 해당 위탁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

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수탁자의 의무 등) ① 수탁자가 위탁업무·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 2. 보조받은 경비 및 사용 중인 재산은 센터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.
 3.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, 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해야 한다.
 4. 성, 연령, 장애유형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.
 5. 센터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6.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·처분 또는 군수의 지도·감독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 7. 위탁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·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및 재해 복구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.
- ③ 수탁자는 위탁업무·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

운영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4조(협약해지 등)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.

1. 위탁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
2.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
3. 센터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때
4. 위탁운영 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때
5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상 위탁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

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때에는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, 장비 및 비품집기, 남은 위탁운영경비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·시설 전반에 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 등의 지도·감독을 하도록 해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제5장 보칙

제16조(비밀엄수) 센터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센터 및 장애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7조(준용)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: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2. 센터의 위탁운영: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3. 관련 사업비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: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4. 그 밖에 회계처리: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2조 및 제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를 개관하는 날부터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.

[별표]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료(제9조제2항 관련)

시설별	단 위	사 용 료(원)	비 고
프로그램운영실	1 일	50,000	
	오전	25,000	
	오후	25,000	
	야간	25,000	
회의실	1 일	80,000	
	오전	40,000	
	오후	40,000	
	야간	40,000	

※ 1일은 8시간, 오전·오후·야간은 각각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시간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도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

신청인 또는 단체명	주 소			
	단 체 명	연락처	사무실 : 자 택 :	
	성 명 (대표자)	핸드폰		
행 사 명				
사용목적 및 내용				
사 용 시 설		1. 프로그램운영실 2. 회의실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(일간)	사 용 횟 수	오전 : 회 오후 : 회 야간 : 회	
첨부서류	행사 계획서 1부			
<p>「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평창군수 귀하</p>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변경(취소·해지)신청서

신청인	주소	우편번호 :			
	단체명	전화	사무실		
	대표자		자택		
사용시설					
행사명					
변경사항	구분	변경 전		변경 후	
	사용일시				
	사용시설				
	기타				
변경사유 (취소사유)					
<p>「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(취소·해지)을(를)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평창군수 귀하</p>					

관계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③ "장애인학대"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언어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2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
 - 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 - 3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
-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을 따른다.

제42조의3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제20조(보조금 등) 법 제4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사회복지법인
- 2.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- 3.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·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

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 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지방회계법

제26조(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)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(이하 "수입대체경비"라 한다)는 제22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(안) 중 제12조(경비보조 등)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, 부족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150